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23년 6월 27일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3년 5월 25일
- 나. 제안자: 전철규 의원 외 13명
-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 라. 상정일자: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3.6.27.)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철규 의원)

####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라.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22조)
- 마.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24조)
- 바. 기존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 (부칙)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협조부서: 도시디자인과
- 다. 입법예고(2023. 5. 31. ~ 6. 8.)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 가. 제정 취지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 제정내용

#####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법 제6조<sup>1)</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진흥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함.

##### ○ 주민참여 등(안 제6조)

-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 구민,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14조<sup>2)</sup>에 부합한 규정이라 사료됨.

<sup>1)</sup>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sup>2)</sup>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제19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안 제20조)

-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에 대해, 제3항에서 공공기관 등의 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는 법 제22조(국고보조)<sup>3)</sup>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 전담부서의 설치 등(안 제22조)

-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협조 사항 등을 규정함.

## ○ 관계기관의 협력 등(안 제23조)

-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과 협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2) 제14조(공청회)<sup>①</sup>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2조(국고보조)<sup>①</su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부칙)
  - 현행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의 폐지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함.

####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조례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각 분야별로(도시디자인, 공공조형물 설치,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제정·시행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강서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관내 시설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디자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참 고****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시행: 2016. 8. 4.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자치구 : 23개 (서울시 포함)**

(※ 조례 미제정: 강서, 양천, 종로)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동대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2.04.07.	
강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12.31.	2022.10.14.
구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2021.12.30.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1.12.29.	
은평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1.12.09.	
금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11.16.	
관악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1.07.08.	2022.10.27.
광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1.03.04.	
성북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1.	2023.04.05.
용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1.	
도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1.	
서대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0.	2023.01.09.
송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0.11.12.	
영등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0.11.05.	2023.03.02.
마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9.24.	2021.09.30.
동작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7.09.	2021.09.23.
성동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2020.05.19.	2021.12.30.
노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0.01.01.	2020.07.01.
서초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2019.12.26.	2021.12.30.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19.12.20.	2023.01.01.
강동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19.12.18.	2020.12.30.
중랑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19.05.23.	2020.07.09.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19.03.28.	2023.03.27.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1.>>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개정 2023. 3. 21.>>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3. 3. 21.>>
-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3. 3. 21.>>

제14조(공청회)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국고보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